

#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1146 |
|----------|------|

2019년 12월 16일  
보건복지위원회

## 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9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장
2. 회부일자 : 2019년 10월 22일
3. 상정일자 : 제290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

【2019년 11월 21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】

## II. 제안설명의 요지 (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)

### 1. 제안이유

-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제로페이)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여성관련시설 이용료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제로페이)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(안 부칙 제2조)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등

나. 예산조치 : 협의완료

다. 기 타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 참조

(2) 입법예고(2019. 9. 25. ~ 10. 15.)결과: 의견없음

(3)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: 별도 첨부 참조

### Ⅲ. 검토보고의 요지 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#### 1 조례안의 개요

- 동 개정안은 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제로페이를 결제시 시립시설의 이용료나 입장료를 감면하기로 했던 것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임.

#### 2 주요사항 검토

##### □ 제로페이 이용자 감면 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르면<sup>1)</sup>,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에 대

1) 제136조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3. 21.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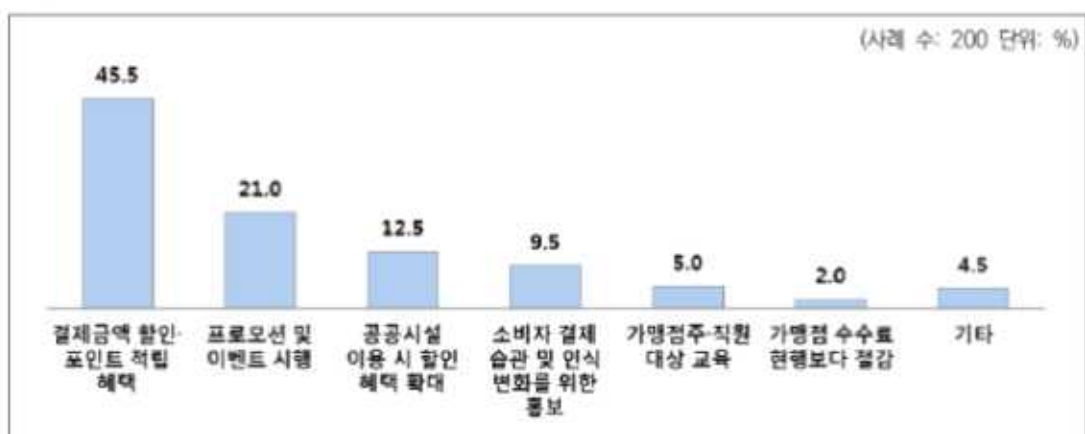
② 사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,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 <개정 2009. 4. 1.>

한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, 이처럼 시민의 권리 및 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.

- 이와 관련하여 지난 제296회 임시회(2019.4.30. 본회의 의결)에서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상상나라 입장료를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시민들에게 입장료의 30%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.
- 개정안은 제로페이 결제시 입장료를 감면해주는 기한을 2019년 말에서 2020년 말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제로페이의 이용률 제고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장이 제출한 것임.
- 서울연구원<sup>2)</sup>에 따르면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가 원하는 지원사항 1위는 결제금액 할인 및 포인트 적립 혜택으로 나타난 바, 개정안에 따라 제로페이 결제 시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시민의 제로페이 사용 활성화의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음.

<소비자가 원하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지원사항>



2) 출처: 「제로페이, 소비자에게 실질 혜택 제공하고 사용처 확대 노력·사용 편의성 증진 필요」  
서울연구원, 2019

- 한편, 서울시 제로페이 추진반이 제출한 조례 등에 따른 공공시설의 제로페이 결제실적을 살펴보면, 2019년 8월말까지 104개 시설 총 114,151건의 제로페이 결제가 이루어져 금액으로는 총 5억 원의 할인이 발생하였으며, 시민들의 제로페이 이용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### 〈제로페이 결제 및 할인실적〉

(단위 : 천건, 백만원)

| 구분       | 계     |        | 5월   |       | 6월   |       | 7월   |       | 8월   |       |
|--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|-------|------|-------|------|-------|
|          | 건수    | 금액     | 건수   | 금액    | 건수   | 금액    | 건수   | 금액    | 건수   | 금액    |
| 전체결제(A)  | 2,010 | 28,341 | 482  | 7,489 | 472  | 6,451 | 483  | 7,164 | 573  | 7,237 |
| 제로페이(B)  | 114   | 4,141  | 28   | 927   | 31   | 832   | 23   | 1,036 | 32   | 1,346 |
| 이용률(B/A) | 5.8%  | 12.4%  | 5.8% | 12.4% | 6.7% | 12.9% | 4.8% | 14.5% | 5.5% | 18.6% |
| 할인금액     | 500   |        | 117  |       | 106  |       | 120  |       | 157  |       |

출처: 서울시 제로페이 추진반, 공공시설 제로페이 할인 연장 추진계획,

- 다만, 동 개정안 대상 시설인 서울상상나라의 제로페이 결제실적을 살펴보면, 930건 927만 원으로 전체 공공시설 결제건수 대비 제로페이 결제 비율은 1.6%로 나타났는데, 이는 서울시 전체 제로페이 결제 비율의 평균(14.6%)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임.

### 〈서울상상나라의 제로페이 결제 및 할인 실적〉

(단위 : 건, 천원)

| 조례명              | 시설수 | 제로페이 결제 |           |      | 제로페이 할인 |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|     | 건수      | 금액        | 비율   | 건수      | 금액      |
| 총계               | 116 | 114,156 | 4,140,851 | 14.6 | 110,366 | 500,719 |
| 서울상상나라 운영예관 한 조례 | 1   | 930     | 9,272     | 1.6  | 848     | 2,509   |

주 : 비율 = 시설별 제로페이 결제액 / 시설별 전체 결제액 x 10

- 즉 개정안에 따른 제로페이 감면 기간의 연장조치가 제로페이 결제 이용 활성화를 통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### 3 종합 의견

- 동 개정안은 제로페이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 결제시, 시립시설의 이용료나 입장료를 2019년 말까지 감면토록 하던 것을 2020년 말까지 그 기간을 1년 연장하고자 하는 안으로, 제로페이 이용시 할인혜택 제공을 통해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제로페이 이용률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.
- 다만 금번 개정안에 따른 서울상상나라의 경우, 여타 공공시설 제로페이 결제율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 방안 마련이라는 조례 개정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임.

붙임 2 : 조례·규칙·지침별 제로페이 할인 공공시설 결제 실적

□ 총괄 (2019.4~8월)

(단위 : 건, 천원)

| 연번 | 조례명                         | 시설수 | 제로페이 결제 |           |      | 제로페이 할인 |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건수      | 금액        | 비율   | 건수      | 금액      |
| 총계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16 | 114,156 | 4,140,851 | 14.6 | 110,366 | 500,719 |
| 1  |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       | 27  | 32,554  | 3,592,336 | 23.0 | 29,281  | 382,035 |
| 2  | 도시공원조례                      | 2   | 61,747  | 195,186   | 8.1  | 61,747  | 83,651  |
| 3  | 장사등에 관한 조례                  | 3   | 330     | 123,118   | 3.6  | 370     | 6,822   |
| 4  |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     | 3   | 288     | 49,293    | 14.1 | 284     | 2,490   |
| 5  |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       | 14  | 733     | 26,146    | 1.6  | 709     | 1,554   |
| 6  |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     | 1   | 402     | 17,741    | 5.7  | 401     | 1,846   |
| 7  |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           | 1   | 930     | 9,272     | 1.6  | 848     | 2,509   |
| 8  | 한강공원보전및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        | 8   | 914     | 6,973     | 1.0  | 914     | 740     |
| 9  | 물재생시설설치및관리에 관한 조례           | 3   | 1,388   | 6,322     | 12.6 | 1,387   | 638     |
| 10 | 시립과학관관리및운영조례                | 1   | 5,616   | 6,101     | 14.0 | 5,616   | 2,614   |
| 11 |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          | 4   | 237     | 5,090     | 6.0  | 119     | 67      |
| 12 |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                 | 6   | 482     | 3,394     | 0.5  | 471     | 347     |
| 13 |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  |     |         |   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 |
| 14 |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              | 1   | 18      | 1,625     | 5.1  | 18      | 644     |
| 15 | 장애인등을위한보조기기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| 4   | 14      | 178       | 18.4 | 14      | 18      |
| 16 | 공공시설의유휴공간개발및 사용에 관한 조례      | 4   | -       | -         | -    | -       | -       |
| 17 |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    | 8   | -       | -         | -    | -       | -       |
| 18 | 장년층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          | 4   | -       | -         | -    | -       | -       |
| 19 | 자유시민대학운영에관한규                | 1   | 15      | 381       | 19.3 | 14      | 42      |
| 20 | 보라매병원주차장관리지침                | 1   | 10      | 20        | 0.0  | 8       | 1       |
| 21 | 조례 개정 없이 할인시행               | 19  | 8,401   | 95,145    | 4.3  | 8,159   | 14,699  |

※ 비율 : 시설별 제로페이 결제액 / 시설별 전체 결제액 × 100

※ 「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는 개정에서 제외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**【재적위원 11명, 참석위원 10명, 전원 찬성】**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

#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1146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년월일 : 2019년 10월 16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 결제시스템(제로페이)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서울상상나라 입장료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제로페이)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(안 부칙 제2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등

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

다. 기 타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
(2) 입법예고(2019. 9. 25. ~ 10. 15.) 결과: 의견없음

(3)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: 별도 첨부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조례 제7107호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“2019년 12월 31”을 “2020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 | 개 정 안  |
|--|--|
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 &lt; 제7107호, 2019. 5. 2.&gt;</p> <p>제2조(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) 제6조 제2항 개정규정은 <u>2019년 12월 31</u>까지 효력을 가진다.</p> 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 &lt; 제7107호, 2019. 5. 2.&gt;</p> <p>제2조(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) ----- <u>2020년 12월 31일</u>-----.</p> |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 할인을 부칙 제2조에서 2020년 말 까지 연장함에 따라 민간위탁시설 수입감소분 손실보전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

#### 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### 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

- 감면손실액 산출 = (1,169,000천원×4.25%(제로페이 이용자)] ×30%(이용료 감면)
- 한시적 적용 : '20.1월~12월(12개월)

(단위 : 천원)

| 구분 | 사업수익<br>(20.1~12월) | 20년 제로페이 이용시<br>감면 손실액(30%할인) | 한시적 적용<br>(12개월) | 비고 |
|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|
| 금액 | 1,169,000          | 15,000                        | 15,000           |    |

### 4. 작성자

- 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 추인순 (02-2133-5113)